

PICC하에서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s and Cases for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under PICC

심 중 석(Chong-Seok Shim)*

<영문초록>

The PICC intended to help harmoniz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law. Rega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contents of PICC as following; Firstly, related to intention of the parties, a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If such an intention cannot be established, the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meaning that reasonable persons of the same kind as the parties would give to it in the same circumstances. Secondly, the statements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at party's intention if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at intention.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such statements and other conduct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mean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give to it in the same circumstances. Thirdly, in applying above articles, regard shall be had to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preliminary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the conduct of the parties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ontract; the meaning commonly given to terms and expressions in the trade concerned; usages. Fourthly, terms and expressions shall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whole contract or statement in which they appear and contract terms shall be interpreted so as to give effect to all the terms rather than to deprive some of them of effect. Fifthly, not only if contract terms supplied by one party are unclear, an interpretation against that party is preferred also where a contract is drawn up in two or more language versions which are equally authoritative there is, in case of discrepancy between the versions, a preference for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 version in which the contract was originally drawn up. Sixthly, where the parties to a contract have not agreed with respect to a term which is important for a determination of their rights and duties, a term which i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shall be supplied. And in determining what is an appropriate term regard shall be had, among other factors, to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ontract; good faith and fair dealing; reasonableness.

Keywords: PICC,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ntention of the Parties,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Good Faith and Fair Dealing, Reasonableness.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cyrus@daegu.ac.kr

목 차

I. 머리말	III. PICC하에서의 법적 기준과 판결례
II. 국제계약법규범 및 주요 국가에서의 입법례	IV. 맺음말
	참고문헌

I. 서 론

계약내용의 해석(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이라고 함은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과 계약의 유효성(contract validity)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요건으로서, 대개 그 목적은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의 존재여부 및 이를 통한 계약내용의 명확한 확정에 두고 있다. 물론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관한 표시행위(表示行爲)와 또한 이에 내재하는 당사자의 진의(眞意)가 일치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계약내용의 해석에 기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달리 계약당사자 간의 표시행위 내지 효과의사(效果意思)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해석에 따른 특단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문제점은 당사자의 표시행위가 다의적(多意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경우 표시 이외의 모든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설령 표시가 일의적(一意的)이더라도 계약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모든 정황을 고려한 타당한 관점에서 계약내용을 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견해는 당해 해석의 대상을 외견상 표시행위에 두어야 하는지[표시주의(다수설)], 달리 내심의 효과의사에 두어야 하는지[의사주의(소수설)]에 따라 대립되어 있으나, 이것은 학리상의 분설로서 실제 입법례 및 판례의 경향은 표의자의 진의를 법적으로 자연적 해석(natural interpretation), 규범적 해석(normative interpretation), 보충적 해석(supplementary interpretation) 등의 방법에 따라 확정되고 있음이 상례이다.¹⁾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해석의 순서가 적용되는데, 곧 일차로 어떤 일정한 표시에 대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 그 본래의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해석, 다음으로 그 일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표시행위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규범적 해석, 최종적으로 당해 해석의 결과 법률행위에 흠이 발견되는 경우 보충적 해석에 의하게 된다.

한편 국제상사계약(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에서 계약내용의 해석은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초 그들이 의도한 바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무엇

1) 이들 해석방법의 상세에 관하여는 김상용,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비교 고찰」, 『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pp.113-116; 윤형렬, 「계약의 보충적 해석」, 『비교사법』, 제16권 제2호, 2008, pp.1-50; 윤진수, 「계약 해석의 방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한국법」,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pp.31-34; 심중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해석과 적용」, 삼영사, 2013, pp.132-133 등을 참조.

보다도 당사자의 의도를 명확히 분별하는 것에 통상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도를 분별한다고 함은 계약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표시행위를 대상으로 이에 부여된 의미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국제상사계약에서 계약내용 해석의 지향점은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에 두고 있음이 통상이다. 그 배경은 계약당사자 일방은 타방[表意者]의 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당해 의사를 이해하게 되므로, 이 경우 표의자를 중심으로 한 계약내용의 해석은 법리적 형평에 어긋난다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곧 국제상사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해석은 표면적으로 외부에 표창된 표의자의 표시행위에 기하여 그 진의를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표의자의 진의 자체의 객관적 확정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하고도 가치있는 진정한 의미를 명정하고 구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는 이 같은 시각을 모토로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보편적 법규범, 곧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으로서 위상을 돋보이고 있는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에서 공표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2010), 이하 PICC]을 중심으로 여기에 제반 판결례를 결부하여 계약내용의 해석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²⁾ 그 결과로부터 실무계를 향하여 논제와 관련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에 있어 일말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입법례

1. 국제계약법규범의 경우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서는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당사자의 진술(*statements*) 및 행위(*conduct*)의 해석에 관한

2) 주지하듯 PICC는 그 자체가 구속력 있는 협약이 아니라, 국제상사계약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만을 집적한 것으로, 미국법상 용어를 빌리기에 소위 재기술(*restatement*)의 성격을 갖는다. 요컨대, PICC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이나 국제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보충적 기준 내지 표준이 될 수 있고, 당사자에게는 계약서 작성의 지침으로서 그리고 각국의 법원이나 중재기관은 국제상사계약에서 야기되는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으로서 적절히 적용 또는 원용할 수 있는 법적 실익을 표창하고 있다. PICC의 기능 내지 목적은,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국제적 통일법 및 국내법의 해석 및 보충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 계약법이나 특수한 거래에 관한 입법의 모델법(*model law*)으로서의 기능을 표창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심종석, 상계서, pp.35-36.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데(제8조), 그 골자는 CISG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그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자연적 해석],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규범적 해석]. 이 경우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자가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습, 관행, 당사자의 후속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일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자연적·규범적 해석].³⁾

본조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 표의자의 사실적 의사를 최우선의 고려사항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의사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으로 객관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불특정 의미를 객관적으로 정할 경우에 있어 고려요소를 추보하고 있다. 아울러 본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계약상 모든 통지에도 다름없이 적용되며, 나아가 당사자의 행위가 계약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이 작위이든 부작위에 의한 것이든 이를 불문한다.⁴⁾ 다만 당해 진술 및 행위가 반드시 CISG의 규율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되어 있어야 함을 제한요건에 두고 있다.⁵⁾

요컨대 본조상 주관적 의도의 해석을 위한 핵심은 일방당사자의 진술 및 그 밖의 행위를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객관적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방당사자의 진술 및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제3자의 이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를 통상 합리적 해석이라고 한다.⁶⁾

2) 유럽계약법원칙(PECL)

PECL(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에서는 앞선 CISG에 비하여 계약해석의 원칙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내용을 보유하고 있는데(제5:101조~제5:107조), 그 내용을 차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계약내용 해석의 일반원칙으로서 계약은 당사자들의 공통된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고, 설령 그 의도가 문언상 문자적 의미와 다른 경우에도 이는 다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당사자 일방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약을 의도하였음이 입증되고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이 이러한 의도를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당해 계약은 그 당사자의 의도된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연적 해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3) 김민중,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원칙”, 「법학연구」, 통권 제3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pp.72-81.

4) Jorge O. Albá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uadernos de derecho transnacional*, Univ. Carlos III de Madrid, Vol. 4, 2012, pp.169-170.

5) Lookofsky, J., *Understanding the CISG*, Wolter Kluwer, 2008, pp.42-46; Schlechtriem, P.,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xford Univ. Press, 1998, pp.70-74.

6) 심종석, 전거서, 130면.

당사자의 의도가 증명될 수 없는 경우 계약은 당사자와 동일한 유형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 하에서 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정하고 있다[규범적 해석]. 이상은 앞서 본 CISG의 규정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PECL상 계약내용의 해석에 있어 부각할 수 있는 논점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의 기준이 CISG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내용은 예비적 교섭(preliminary negotiations)을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된 제반 상황과 계약이 체결된 후를 포함하여 당사자의 행태, 계약의 성질과 목적, 당사자 간 유사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관행, 당해 계약조항과 표현에 당해 상거래 계에서 공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 및 유사한 조항에 대하여 이미 확립된 해석, 관습,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⁷⁾

다른 한편 문서작성자 불이익의 원칙(contra proferentem rule)에 대해서는 CISG 내지 이하 PICC 등과 동일한 법적 시각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다만 개별적으로 합의된 계약내용은 그리 하지 않은 것에 우선하고, 개별 계약조항은 그것이 속하는 계약내용의 전체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의 조항을 적법하고 또는 유효하다고 하는 해석이 그렇지 아니하는 해석에 우선한다고 명시하여, 이들 법규범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보유하고 있다.⁸⁾ 또한 언어상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계약이 복수 이상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고 그 중 어느 언어가 기준인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각각의 언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때는, 계약이 최초로 작성된 언어본에 따른 해석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부각할 수 있는 특·장점이라 본다.

3)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

PICC(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에서는 자연적·규범적·보충적 해석을 공히 포함하고 있다. 우선 자연적 해석에 관하여, 계약은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고[제4.1조,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가 확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CISG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 하에서 부여하였을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조, (2)].

한편 PICC는 의사표시 및 그 밖의 당사자 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의 진술 및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진술 및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에서 부여하였을 의도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함에 있어 관련된 일체의 사정에 대한 고려사항은, 당사자 간의 예비적인 협상, 당사자 간에 확립한 관행,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행위, 계약의 성격과 목적, 용어와 표현이 당해 상거래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

7) 신의칙 및 공정거래에 관한 상례는 한재필, 「국제상거래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 초국적 국제무역관련규칙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3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pp.107-127.

8) Huber, P. · Mullis, A.,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p.15-16.

관습 등이다(제4.3조).

PICC는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타 법규범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존치해 두고 있는데, 예컨대 용어와 표현은 그것이 나타나 있는 전체의 계약 또는 진술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제4.4조), 당해 계약조건은 그 일부조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보다 모든 조건에 그 효력이 부여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고(제4.5조), 나아가 앞서 본 문서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제4.6조).⁹⁾ 이 경우 계약이 동등한 권위를 갖는 복수 이상의 언어본으로 작성되어 불일치가 있는 경우는 앞선 PECL과 다름이 없다.

PICC는 보충적 해석에 관한 기준으로서 당사자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정에 적절한 조건이 부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 경우 적절한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성질과 목적, 신의성실과 공정거래, 합리성(reasonableness) 등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후보하고 있다(제4.8조).¹⁰⁾

4) 소결

계약의 해석에 관한 이상의 국제계약법규범의 규정은 계약당사자들이 당초 그들 계약내용에 편입치 못하고 있는 경우와 서로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이상의 법규범을 비교할 때, CISG와 PICC는 당사자의 진술과 그 외의 행동에 결부된 의사표시에 주안점을 두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 일방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그 일방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서로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PECL은 일반적으로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이 특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의도를 보유한 점이 증명되고, 계약체결 당시 다른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있었다면, 당해 계약은 그 일방의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아 표의자의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여, 달리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¹¹⁾

2. 주요 국가의 경우

1) 독일

9) Bonell, M. J., "A global arbitration decided on the basis of the UNIDROIT Principles", *17 Arbitration International*, 2001, pp.249-261.

10) Bonell, M. J., "The UNIDROIT Principles and CISG : Sources of inspiration for english courts?", *Uniform Law Review*, 2006, pp.305-317.

11) 윤진수, 전제논문, p.40.

독일 민법은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제133조) 내지 계약내용의 해석(제157조)에 관한 2개의 조문을 존치해 두고 있는데,¹²⁾ 전조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실제의 의사에 주안점을 두고 파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자적 의미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연적 해석]. 후조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의 기준으로서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거래관행을 적의 고려할 것과 신의성실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이탈리아

이탈리 민법에서도 앞선 독일과 마찬가지로 2개의 조문을 존치해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이 경우 계약의 내용상 개별단어의 자의적 해석에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당사자의 공통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이후의 행동을 포함한 당사자의 종합적 행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62조). 특히 동법에서는 신의칙에 관한 계약내용의 해석을 별도의 조문으로 명정해 두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제1366조),¹³⁾ 이 경우 동조는 계약내용의 해석에 한하여 포괄적으로 기능하는 특질을 내재한다.

3) 스위스

스위스 채무법에서는 계약의 방식 및 그 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치된 실제의 의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착오 또는 진정한 계약관계를 은폐할 의도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 또는 표현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8조 (1)]. 나아가 계약의 내용은 법률의 제한 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본조항은 법률의 규정과 다른 약정은 법률이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약정을 함으로써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 또는 인격권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1)].¹⁴⁾

12) BGB, §157 :“Contracts are to be interpreted as required by good faith, taking customary practice into consideration.”; §133 :“When a declaration of intent is interpreted, it is necessary to ascertain the true intention rather than adhering to the literal meaning of the declaration.”

13) Civil Code, Art. 1362 :“The contract must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Art. 1362 :“The common intent of the parties, not limited to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s, the general course of their behaviour, including that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14) Civil Code, V, Art. 18, (1) :“When assessing the form and terms of a contract, the true and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must be ascertained without dwelling on any inexact expressions or designations they may have used either in error or by way of disguising the true nature of the agreement.”; Art. 19, (2) :“Clauses that deviate from those prescribed by law are admissible only where the law does not prescribe mandatory forms of wording or

4) 미국

미국 계약법[restatements]에서는 법의 해석 시에, 통상 문언해석원칙(plain meaning rule), 사회적 목적원칙(social purpose rule)과 같은, 언어사용과 관련된 원칙을 정히 인정하고 있다. 계약내용 해석에 관해서는 이러한 일반적 법해석 원칙 이외에, 특히 구두증거배제원칙(parol or extrinsic evidence rule)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동 원칙은 최종적인 서면에 의한 계약은 계약체결 이전의 모든 약속 또는 동시에 존재하는 별개의 구두로 한 약속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아 계약당사자 간에는 최종적인 서면계약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원칙을 의미한다. 구두증거배제원칙은 미국의 판례법에서 생성된 원칙이지만, 오늘날에는 명문의 법규정으로 수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계약원칙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¹⁵⁾ 요컨대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의 해석은 계약 내용의 확인임과 동시에 계약에 당사자가 동일한 의미로 부가한 내용은 그 의미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00조).¹⁶⁾

5)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현재 계약내용[法律行爲]의 해석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해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아마 내심적 요소에 대한 외부적 판단을 법률로써 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실제적 해석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현재 다양한 의사개진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해석이 실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여하히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우리 민법의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해서는 그나마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하는 조항인 민법 제105

where deviation from the legally prescribed terms would contravene public policy, orality or rights of personal privacy.”

15) Flechtner, H. M., *et al.*,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 Press, 2008, pp.329-339.

16) Restatements of Contracts, §201 :“(1) Where the parties have attached the same meaning to a promise or agreement or a term thereof, it i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at meaning. (2) Where the parties have attached different meanings to a promise or agreement or a term thereof, it i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meaning attached by one of them if at the time the agreement was made (a) that party did not know of any different meaning attached by the other, and the other knew the meaning attached by the first party; or (b) that party had no reason to know of any different meaning attached by the other, and the other had reason to know the meaning attached by the first party. (3) Except as stated in this Section, neither party is bound by the meaning attached by the other, even though the result may be a failure of mutual assent.”

조(임의규정) 내지 제106조(사실인 관습)에 대한 2개의 규정이 적용 또는 원용되고 있는 상황이다.¹⁷⁾¹⁸⁾

III. PICC 하에서의 법적 기준과 판결례

1. 당사자의 의사

1) 법적 기준

(1) 당사자 공통의사의 우선 적용

앞서 본 바와 같이 PICC에서는, 계약은 거래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제4.1조, (1)], 다만 그러한 의사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 당해 계약은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 하에 있을 경우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2)]. 본조항은 계약의 조건에 부가된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공통된 의사에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조문이다.¹⁹⁾

요컨대 통상의 국제상거래에 있어 계약내용의 문면상 사용된 용어의 문리적 의미와 합리적인 자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가 상이하여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당사자 간에 흔히 있는 것이라면, 계약당사자는 웅당 계약조항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계약당사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와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당해 사안이 이 같은 경우에 놓여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일방당사자가 공통된 의사라고 주장하는 특정한 의미가 사실상 당해 계약의 체결시점에 상대방에 의하여 공유 또는 이해되었음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조항은 신중하고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²⁰⁾

(2) 합리적인 자의 기준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를 확립하거나 추단할 수 없는 경우 개입되는 합리적인 자의 이해는

17) 민법, 제105조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8) 상세는 장병일, “유럽공동매매법 제안[CESL(p)]과 우리 민법”, 『법학연구』, 제54집, 한국법학회, 2014, pp.231-233.

19) 이하 PICC 제반 규정의 인용은 기술편의상 생략한다. 전문(全文)은 「<http://unilex.info/>」를 참조.

20) Vogenauer, S., et al.,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493-539.

통념과도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해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비추어 동일한 언어능력, 기술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사업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 경우 본조 (2)는 CISG의 연관규정에서와 같이[제8조, (2)] 예컨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이 당해 의무이행으로서 어떤 수준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동일한 부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합리적인 자로서 평균인의 행위방법이 그 기준으로 수용된다. 환언하면 당사자의 행위로부터 당해 약정이나 약정에 일치하는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본조항에 따라 당사자와 동일한 구체적 사정에 있는 정상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3) 자연적 및 규범적 해석의 기준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공통한 것이라면 당해 의사의 확정을 위해서는 부수하는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적의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려사항은 전술한 바 제4.3조에서와 같이 당사자 간의 예비적 협상,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행, 계약체결 이후 당사자들의 행위, 계약의 성격과 목적, 용어와 표현이 당해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 그 밖에 관습 등이다. 달리 계약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 하에서 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해석될 것이다.

(4) 표준약관의 해석

제4.1조 (1)에서의 소위 자연적 해석과 동조 (2)에서의 규범적 해석은 표준약관에 기한 해석상 경우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특별한 성질과 목적이 고려되어 편입된 표준약관은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동종업계의 합리적인 자가 가질 수 있는 통상의 이해수준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해석에 관한 본조항은 당해 표준약관 해석의 경우에도 통상의 합리적인 자의 기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표창하고 있다. 이 경우 표준약관은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일방에 의해 미리 마련되고 또한 상대방과 협상이 없이 실제로 사용되는 계약조항을 총칭한다[제2.1.19조 (2)].

2) 판결례

(1) 논점과 판결요지²¹⁾

21)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at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1/2002」, 2002.11.05. 유사판례로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이하 본 문구는 생략한다).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Court of Appeal(Australia), 「Franklins Pty Ltd. v Metcash Trading Ltd.」, 2009.12.16., Tribunal Supremo(Spain), 「74/2012」, 2012.02.28., High Court of Justice, Queen's Bench Division, Commercial Court(U.K.), 「Great Hill Equity Partners II LP v Novator One LP & Ors」, 2007.05.22., Court of Appeal(New Zealand), 「2000, NZCA 350 ; Hideo Yoshimoto v Canterbury Golf International Limited」, 2000.11.27. 본고에서 판결이라고 함은 기술편의상 법원의 판결과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합체한 의미로 새긴다.

A(원고 러시아)와 B(피고 독일)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B가 생산하는 물품의 영업과 관련하여 A는 B에게 상업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양당사자는 본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A는 러시아에서 B의 물품에 대한 C(구매대상자) 및 유통경로에 대한 상업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함을 합의하였다. 본건 물품매매계약은 B와 C 간에 서명이 되었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C는 본건 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물품을 B에게 반환하였다. 이에 B는 본건 매매가 성공한 경우에만 A에게 상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달리 매매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자신은 A에게 상업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매매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사유로 당초 A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지급을 거절하였다. 한편 A는 당해 합의서에는 상업수수료에 대한 보수가 성공한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B가 C에게 제공할 물품이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C의 특정물품 사양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간 자신이 B에게 제공한 상업서비스에 대한 보수에 그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항변하고 B에게 당해 보수지급을 청구하였다.

본건 중재판정부는 준거법(PICC)을 명시한 계약내용을 해석하면서, 양당사자의 법체계에 대한 언급은 특정 국내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해 PICC의 적용을 결정하였다. 나아가 당해 분쟁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에 비추어 당사자 간의 상이한 해석에서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PICC 제4.1조 및 제4.3조를 적용하였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주문으로서 본건 합의서에는 A가 제공하여야 할 상업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계약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B와 C 간의 계약이행에 관한 그 어떠한 명시적인 계약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 A가 제공한 상업서비스에 대한 보수지급이 A의 중개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의 성공적인 이행이 조건이었던지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PICC 제4.1.조 (2)를 적용하여 B에게 당해 보수를 지급할 것과 이에 대한 그간의 이자 또한 정히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다.

(2) 평가

본건에서 B는 당초 A의 상업서비스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다만 C와의 성공적인 계약이행을 조건으로 A에 대한 보수지급을 주장하였으나, A의 상업서비스에 대한 노력은 이미 제공된 상태이고 또한 합의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료히 뒷받침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건 판정은 정당하다고 본다. 가사 B의 주장을 원안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의 사유로서 C가 요구한 물품사양을 충족할 수 없었다고 하는 원인마저도 A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은 동종의 합리적인 자의 기준에서도 형평에 부당하고 또한 가혹할 것으로 보아 본건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2. 진술 및 그 밖의 행위의 해석

1) 법적 기준

제4.2조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진술 또는 행위를 해석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를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다면 그리고 모든 다른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진술 또는 행위가 그 당사자와 동종업계의 합리적인 자인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할 수 있다는 양해에 따라 해석되어진다면 관련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본조는 CISG 제8조 (1), (2)와 문리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본조를 통해 계약의 성립은 진술과 행위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당해 계약이 궁극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통상의 법적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²³⁾

그러나 계약 체결이후에 일방적인 행위가 개입된 경우 이는 또 다른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할 것인데, 이를테면 물품의 하자,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에 따른 통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판결례

(1) 논점과 판결요지²⁴⁾

A(원고 독일)는 B(피고 인도)와 C의 인도 및 설치를 계약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본건 C를 인도할 당시 B는 C의 하자를 이유로 물품반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A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그 과정에서 B는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A의 불실표시(misrepresentation)로 인하여 본건 계약이 무효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당해 C의 인도지연과 하자를 이에 후보하였다.

본건 계약서의 준거법조항에는 스위스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A는 본조항에 따라 본건의 적용법은 스위스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B는 스위스법에 대한 계약내용은 당해 계약에만 한정되며,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비롯된 사기에 의한 불실표시 문제는 형평 및 신의에 따라 행위지법으로서 인도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 이 경우 모를 수 없었다(could not have been unaware)는 표현은 통상 상대방에게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상서는 윤진수, 전제논문, p.40.

23) Vogenauer, S., *op. cit.*, pp.495-497.

24)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965I」, 2000.08.,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10335」, 2000.10.,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9875」, 200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of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52/1998」, 1999.04.16.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B의 주장을 배척하고 A의 주장을 수용하여 스위스법을 유일한 적용법으로 판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본건을 판정함에 있어 PICC 제4.1조 및 제4.2조를 언급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치된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내용은 양당사자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의 동일한 상황에서 서로에게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경우 합리적인 자의 의사는 계약에 대한 사안과 계약의 성립과정에 관련된 사안의 구별 없이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분쟁을 포함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2) 평가

본건에서의 주안점은 합리적인 자의 판단기준과 그 범위에 관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당해 기준과 범위를 각각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과 계약의 전 과정을 포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또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실무계에 비추어 분쟁의 개별사안은 국내법상의 공법적 위법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명시적인 준거법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하여 규율됨을 주문한 전형적인 판결례로 취급할 수 있다.

3. 관련된 일체의 사정

1) 법적 기준

제4.3조에 열거된 규정내용 중에 일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련되어 있고[(a) 내지 (c)], 그 밖의 것은 통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d) 내지 (f)]. 이 경우 그 밖의 상황으로서, 곧 (e)와 (f)의 규정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e)의 경우 용어와 표현이 당해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는 당해 산업부문에서 전형적인 것일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이에 해당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 속하지 않는 산업부문에 그것이 특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히 관련될 수 있고, (f)의 경우 관습은 계약당사자가 공히 그들이 동의한 관습과 그들이 그들 사이에서 확립한 관례에 구속되며, 당사자들은 국제거래에서 관련 특정한 상거래 당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그들에 의해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습에 구속된다고 하는 제한규정(제1.9조)의 충족을 그 조건에 두고 있다.

2) 판결례

(1) 논점과 판결요지²⁵⁾

25)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Chamber of Industry and Commerce of the Russian Federation, 「83/2008」, 2008.12.22.,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Italy), 「8908」, 1998.09.,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11295」, 2001.12.

A(원고 독일)는 B(피고 러시아)와 D를 계약의 목적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후 A는 B와의 합의에 의하여 물품의 수량·인도·대금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B는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고집하면서 A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건 계약에는 러시아법이 적용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A는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은 그간 양당사자의 문서 및 서류의 교환에 의하여 정히 충족되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B는 A가 주장하는 변경사항은 반드시 문서에 의해 양당사자가 직접 작성·서명하였어야 유효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본건 판정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B의 주장을 배척하고 A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판정취치로서 중재판정부는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여하한의 추가 및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양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된 경우에만 계약의 일부로 취급되어 유효하며, 또한 당해 추가 및 변경사항은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다름없이 모두 원본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계약내용을 인용하였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PICC 제2.1.1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에 비추어 국제무역에서 유효하게 확립되어 있는 관습을 인용하였다. 나아가 본건에서 계약은 양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행위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음에 따라 이것은 양당사자의 합의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이러한 합의는 양당사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2) 평가

본건은 전자문서의 유효성 여부가 논점이라고 볼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국제무역에서의 관습 및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결부하여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통상 전자문서는 국내 실정법상 종이서면(paper-based document)과의 등기능성(functional equivalent)을 담보하고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그 법적 효력이 다름없이 인정되고 있는 차제에 있다.²⁶⁾

러시아는 CISG 제11조(계약의 형식)와 제29조(계약의 변경과 서면요건)를 유보하고 있어 본건에서 서면형식에 의한 계약내용의 추가와 그 밖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 이 경우 전자문서는 전통적인 서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에 있어 특단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에 비추어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입증함에 있어서도 별단의 제한 내지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본건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타당하다고 본다.

본건은 실무상 국제무역에 있어 러시아와 같이 계약의 형식 또는 계약의 변경과 서면요건

26) 전자문서의 법적 기준과 유효성에 관한 상제는 강원진,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pp.255-275., 심종석, 전게서, pp.176-193.

에 관한 특단의 제한이 있는 국가와의 상거래에 있어서 특단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판결례로 새길 수 있다.²⁷⁾

4. 계약이나 진술의 전반을 통한 해석과 그 원칙

1) 법적 기준

제4.4조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모두가 사용하는 약관 또는 표현은 명백히 분리하여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맥의 일체로 취급하여야만 함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본조에 따라 당해 계약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전체 계약 또는 진술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계약내용은 그 순서와 상관없이, 해석상 각각의 중요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계약내용 또는 조항 간에 원칙적으로 우선순위는 없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과정에 있어 일련의 부수적인 통지 또는 선언은 당해 계약의 운용상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이로부터 다툼이 발생한 경우 통상 특정한 성격의 계약내용은 통상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에 우선함이 상례라 할 수 있다.²⁸⁾ 따라서 실무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전에 계약내용의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은 본조에 비추어 당사자의 법적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선결요건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사항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는 계약당사자가 당초 계약내용을 명정함에 있어 계약내용 중 일부에 대한 효력을 배제하는 대신에 모든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불명확한 계약조건을 해석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다. 다만 본조는 앞서 본 제4.1조 내지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내용 해석에 따른 기본규칙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2) 판결례

(1) 논점과 판결요지²⁹⁾

A(원고 인도④)와 B(피고 인도⑤)는 B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계약내용에 따라 A는 계약체결 즉시 구입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B가 아파트 매도에 따른 세무청산을 종료한 시점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만약 A가 B로부터 청산통지서

27) 본고 제출시점 기준(2014.11.10) 러시아와 같은 유보국은 아르헨티나, 벨라로스, 칠레,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파라과이,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상세는 심종석, 전게서, pp.40-42.

28) NET, L., "Rules of interpretation of contracts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and their possible adoption in Vietnamese law," *Uniform Law Review*, Vol. 7, 2002, pp.1017-1030.

29) High Court of Delhi(India), 「CS (OS) No. 1599/1999 : Sandvik Asia Pvt. Ltd. v. Vardhman Promoters Pvt. Ltd.」, 2006.08.21.

를 수령하고도 2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B가 몰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본건 계약서에서는 아파트 매매에 관한 제반 서류가 B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아파트 권리취득에 관한 취소불능의 위임장이었다. 본 사항에 기하여 계약내용에는 5개월 내 본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선급된 계약금은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A가 계약금 20%를 지급하고 B가 청산통지서를 A에게 인도할 당시 A는 B에게 본건 위임장 및 아파트 권리증서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이후 B는 5개월이 지나서도 본건 증서를 A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A는 당초 선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B는 A에게 잔금의 지급을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금을 몰수를 선언하였다.

법원은 B의 주장을 배척하고 A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취지로서 법원은 위임장 및 매도증서를 인도하지 않은 것은 본건 계약취소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매도증서를 인도하지 않은 것은 동일한 결과를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계약내용에 기한 개별조항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 당해 계약 또는 진술은 전반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PICC 규정을 원용하였다(제4.4조). 나아가 개별조항은 일부 개별조항의 효과를 박탈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별조항 모두의 효력이 긍정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제4.5조)

(2) 평가

본건은 계약내용에 기한 용어와 표현은 그것을 당해 계약 또는 진술의 전반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고 또한 계약조건은 그 중의 일부의 효력이 부정되도록 해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모든 계약조건이 효력이 긍정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PICC의 규정이 가감없이 적용된 전형적인 판결례로 취급할 수 있다.

5. 문서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1) 법적 기준

일방당사자는 특정한 계약내용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방당사자 자신이 그것을 작성하였거나 계약내용에 편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당사자는 본인이 채택·편입한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6조는 일방당사자가 제공한 계약조항이 불명확한 경우 그것을 제공한 일방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본조가 적용되는 수준은 당해 계약내용의 특징에 따라 좌우된다. 곧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당해 계약조항이 계약당사자 간에

별단의 합의에 대한 필요가 경감될수록 계약내용에 당해 내용을 채택·편입한 일방당사자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해석된다는 사실은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상사계약은 종종 특정한 계약사항에 관하여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복수 이상의 언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어떠한 언어가 우선하는 것인지를 표시하고 있음이 상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모든 언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내용에 비추어 문면상 계약내용의 불일치한 부분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제4.7조는 명백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 않으나, 다만 단순히 당해 계약내용이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는 원본일 경우, 곧 그 작성된 언어본에 대하여 복수 이상의 정본이 작성되었다면, 그 중 가장 먼저 작성된 계약서에 따른 해석이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조의 유의사항으로서,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본조에 우선한 별단의 해결책이 우선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계약당사자가 국제적 상관습으로서 널리 알려진 인코텀즈(Incoterms) 또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600) 등에 기초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예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언어본 간에 불일치하는 때에는 당해 상관습에 기한 어느 하나의 언어본이 나머지보다 훨씬 명백한 경우라면 당해 언어본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판결례

(1) 논점과 판결요지³⁰⁾

A(원고 러시아)와 B(피고 캐나다)는 러시아어와 영어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본건 계약내용에는 이상의 2개 언어본은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동의 정본임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재조항에 있어 러시아본과 영어본은 계약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곧 영어본에서는 당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기 위한 중재판정부의 공식 명칭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중재판정부의 소속과 조직에 대한 명확한 특징이 부재하였다. A는 자신의 중재조항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B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면서 중재판정부에 본건 판정을 의뢰할 당시 B는 자신의 법정관할지를 언급하면서 A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양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계약내용의 해석규칙을 정한 러시아민법 제431조를 원용하면서,³¹⁾ 양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문안에 사용된 단어 그대로의

30)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of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217/2001」, 2002.11.06., Kyiv Commercial Court of Appeal(Ukraine), 「910/21449/13」, 2014.01.13.

31) Civil Law, Art. 431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While interpreting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cour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s and expressions, contained in it. The literal meaning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in case of its being vague

의미와 표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사자의 의사를 결정하기가 곤란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국제무역관습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널리 원용되고 있는 PICC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본건 언어적 불일치 문제에 대하여, 문안이 러시아어로 먼저 작성되었으며 이후에 영어로 번역되었음을 적시하고 계약이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되고 그것이 모두 정본인 경우 언어본 간에 불일치가 있는 때는 그 중 가장 먼저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PICC 제4.7조를 원용하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본건 계약의 러시아본 해석을 우선하여 판정하였다.

(2) 평가

본건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다른 언어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계약내용에 따른 해석상의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 그 핵심이다. 본건 중재판정부는 하나의 계약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되고 각기 동등한 원본의 효력을 갖는 복수의 계약서가 존재하여 당해 계약서 간에 언어적인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먼저 작성된 계약서에 따른 해석이 우선한다는 PICC의 규정을 원용하여 판정한 것은 당해 규정내용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판정이라고 본다.

6. 계약공백의 보충

1) 법적 기준

제4.1조 내지 제4.7조는 계약의 해석을 다루고 있는 조문이다. 곧 그 핵심은 불명확한 계약 내용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의미, 이를테면 당사자의 진의를 결정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제4.8조에서는 이와는 다른 특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곧 누락된 조건(omitted terms)의 적용에 관한 계약공백의 보충에 관한 것이다. 이는 계약체결 이후 양당사자가 자신의 계약서에 전혀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된 경우 양당사자가 당해 문제를 다루지 않길 원하거나 또는 그것을 단순히 예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내용 또는 조항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약상 누락된 조항 또는 그 차이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 본조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

shall be identified by way of comparison with the other terms and with the meaning of the contract as a whole. If the rules, contained in the first part of the present Article, do not make it possible to identify the content of the contract, the actual common will of the parties shall be found out with account for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ll the corresponding circumstances, including the negotiations and the correspondence, preceding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habitual practic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the customs of the business turnover and the subsequent behaviour of the parti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한 해결책으로 제공된다. 예컨대 계약의 이행에 따른 물품의 품질결정(제5.1.6조), 물품의 가격결정(제5.1.7조), 계약의 이행시기(제6.1.1조), 계약이행의 순서(제6.1.4조), 계약이행의 장소(제6.1.6조), 물품대금지급과 관련한 미표시 통화(제6.1.10조)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³²⁾ 당해 규정내용을 차례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에 의해 이행의 질이 특정되지 않고 또한 결정될 수도 없는 경우 당사자는 제반 사정으로 보아 질적으로 합리적인, 그러나 평균보다 낮지 않은 정도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둘째, 계약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또한 가격을 정하기 위한 규정도 두지 않은 경우 다른 표시가 없는 한, 당사자들은 계약체결 당시에 그러한 이행에 대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징구되는 가격을, 그러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한편 계약당사자 일방이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여 결정된 가격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그러한 가격은 다른 어떠한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체된다. 다른 한편 제3자가 가격을 정하기로 하였으나 그가 가격을 정할 수 없거나 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 그 밖의 경우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하였거나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 그것과 가장 등가적인 요소(equivalent factor)를 그 대체기준으로 사용한다.

셋째,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시기가 정하여져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시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넷째, 계약이행의 순서에 기하여, 당사자들이 그들의 이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의 이행이 기간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당사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계약의 이행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또한 결정될 수도 없는 때에는,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그 밖의 채무는 자신의 영업소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그의 영업소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를 부담하여야 한다.

여섯째, 금전채무가 특정한 통화로 적시되지 않은 경우 물품의 대금지급은 당해 지급이 행하여져야 할 장소의 통화로 하여야 한다.

본조에 비추어 누락조항 적용 시의 기준은 당해 사안의 제반 상황에 적절하여야 한다. 곧 그 상황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특정된 조항, 사전 협의 또는 계약체결 후에 수반되는 일련의 행위에서 유추되는 것 등을 당사자의 의도로 고려

32) 참고로, 이 경우 이상의 문제들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묵시적 의무는, 당해 계약의 성격과 목적(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ontract),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확립한 관례와 관습(practices established between the parties and usages), 신의와 공정거래(good faith and fair dealing), 합리성(reasonableness) 등이다(PICC, 제5.1.2조).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도가 밝혀질 수 없는 경우 적용되어야 할 규칙은 당해 계약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그리고 신의 및 공정거래와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판결례

(1) 논점과 판결요지³³⁾

B(피고 폴란드)는 A(원고 스위스)에게 특정한 독점적 권리를 허여하였다. A는 당해 권리를 자신의 자회사 중의 하나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B는 A가 당해 권리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A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과정에서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곧 A가 자신의 자회사에게 당해 독점권을 양도할 당시 권리 그 자체만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의무를 포함하여 A가 B와 체결한 모든 계약을 양도하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중재판정부는 적용법으로서 폴란드법에 본건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다고 보고, 본건이 국제상사계약임을 고려하여 PICC를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본건에 기하여 B가 계약상 주요 의무는 보류하고 다만 A와 그의 자회사에 국한한 세부 권리만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PICC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계약내용의 해석에 기한 PICC의 규정을 통하여 이에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에 폴란드민법 제65조³⁴⁾ 및 PICC 제1.1조, 제4.1조 (1) 및 제4.8조 (2)의 규정을 원용하였다. 당해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합치된 의사, 당해 계약의 성격 및 목적, 신의, 공정거래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해석되고 보충되어야 한다고 보고 A와 자회사의 지위를 동일하게 보아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공백의 보충과 관련하여 PICC는 계약당사자들이 그들의 권리·의무의 결정에 중요한 계약조건을 합의하지 않은 때에는 제반사정으로 보아 적절한 계약조건으로써 그러한 공백을 보충하여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무엇이 적절한 계약조건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성격과 목적, 신의와 공정거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건 중재판정부는 이들 사항을 고려하여 본 사안을 판정하였으나, 이에 후보하여 문서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곧 일방이 제공한 계약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동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33)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11295」, 2001.12.

34) Civil Law, Art. 65 :“1. A declaration of will shall be interpreted as may be required by the principles of social co-operation or by established customs,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has been made. 2. In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and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nstead of relying on its literal text.”

우선한다고 하는 규정을 원용하지 않았다는 판정의 흠결이 엿보인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판정결과를 유추할 수 있음에 따라 본건은 무리 없는 판정이라고 판단된다.

VI. 맺음말

본고는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보편적 일반원칙으로서 그 지위를 표창하고 있는 PICC를 중심으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따른 법적 기준을 제반 판결례를 결부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PICC상 계약의 해석에 관한 규정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다만 그러한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당사자들과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 하에서 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동 당사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때에는 동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 하에서 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예비적 협상,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확립한 관례, 계약체결 이후 당사자들의 행위, 계약의 성격과 목적, 용어와 표현이 당해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 관습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계약이나 진술의 전반에 비추어 해석에 기하여 용어와 표현은 그것이 등장하는 당해 계약 또는 진술의 전반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해석원칙으로서 당해 계약조건은 그 중의 일부의 효력이 부정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계약조건이 긍정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다섯째, 계약당사자 일방이 제공한 계약조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동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우선하며, 하나의 계약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되고 각기 동등한 원본의 효력을 갖는 복수의 계약서가 존재하여 동 계약서들 사이에서 언어적인 불일치가 있는 때는, 그 중 가장 먼저 작성된 계약서에 따른 해석이 우선한다.

여섯째, 계약공백의 보충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그들의 권리·의무의 결정에 중요한 계약조건을 합의하지 않은 때는, 제반사정으로 보아 적절한 계약조건으로써 그러한 공백을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엇이 적절한 계약조건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성격과 목적, 신의와 공정거래, 합리성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원진,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 김민중,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원칙”, 「법학연구」, 통권 제3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김상용,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비교 고찰”, 「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심중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해석과 적용」, 삼영사, 2013.
- 윤진수, “계약 해석의 방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한국법”,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 윤형렬, “계약의 보충적 해석”, 「비교사법」, 제16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 장병일, “유럽공동매매법 제안[CESL(p)]과 우리 민법”, 「법학연구」, 제54집, 한국법학회, 2014.
- 한재필, “국제상거래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 초국적 국제무역관련규칙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3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 Bonell, M. J., “A global arbitration decided on the basis of the UNIDROIT Principles”, *17 Arbitration International*, 2001.
- Bonell, M. J., “The UNIDROIT Principles and CISG : Sources of inspiration for english courts?”, *Uniform Law Review*, 2006.
- Flechtnner, H. M., *et al.*,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 Press, 2008.
- Huber, P. · Mullis, A.,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 Jorge O. Albá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uadernos de derecho transnacional*, Vol. 4, Univ. Carlos III de Madrid, 2012.
- Lookofsky, J., *Understanding the CISG*, Wolter Kluwer, 2008.
- NET, L., “Rules of interpretation of contracts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and their possible adoption in Vietnamese law,” *Uniform Law Review*, Vol. 7, 2002.
- Schlechtriem, P.,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xford Univ. Press, 1998.
- Vogenauer, S., *et al.*,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Court of Appeal(New Zealand), 「2000, NZCA 350 ; Hideo Yoshimoto v Canterbury Golf International Limited」, 2000.11.27.
- High Court of Delhi(India), 「CS (OS) No. 1599/1999 : Sandvik Asia Pvt. Ltd. v. Vardhman Promoters Pvt. Ltd.」, 2006.08.21.
- High Court of Justice, Queen's Bench Division, Commercial Court(U.K.), 「Great Hill Equity Partners II LP v Novator One LP & Ors」, 2007.05.22.
-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8908」, 1998.09.

-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9651」, 2000.08.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9875」, 2000.10.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10335」, 2000.10.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11295」, 2001.12.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at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1/2002」, 2002.11.05.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Chamber of Industry and Commerce of the Russian Federation, 「83/2008」, 2008.12.22.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of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52/1998」, 1999.04.16.
 Kyiv Commercial Court of Appeal(Ukraine), 「910/21449/13」, 2014.01.13.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Court of Appeal(Australia), 「*Franklins Pty Ltd. v Metcash Trading Ltd.*」, 2009.12.16.
 Tribunal Supremo(Spain), 「74/2012」, 2012.02.28.